

1. 개정이유

통일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9급 1명) 중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며, 통일 미래에 관한 전략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부 장관 밑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통일부 정원으로,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각각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통일부의 정원으로 재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의 정원 1명(8급 1명),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의 교류부와 운영부를 통합하며, 부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통일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 및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 및 정책협력과”를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 및 참여소통과”로 한다.

제6조제10항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국내외 기관과”를 “기관·단체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통일문화 운동단체”를 “통일운동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7호) 중 “기관·단체”를 “기관”으로 한다.

1. 통일정책 국내 협력 강화 대책의 수립·시행
7. 통일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및 보급
8.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제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2.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4.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5.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7.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8.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

제6조의2제11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제20조제2항 본문 중 “운영부·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운영부”를 “운영교류부”로, “보고, 교류부장 및”을 “보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교류부장 및”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교류부장 및”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부장”을 “운영교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협의”를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

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중전의 제11호) 중 “청사 및 숙소 등 시설·장비”를 “시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6.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
7.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
8.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지원
9.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지원
10. 각 분야별 공동행사 및 민관 합동행사의 협의·지원
11.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12. 북한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양성 등 지원
13.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제7장의2(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장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및 남북협력지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2(중전의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기획총괄과장”을 “남북협력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약”을 “협약·연락”으로, “체결·이행”을 “체결·이행·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분석·평가
22.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협력
2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지원
24.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제8조의2(중전의 제25조) 제4항제25호(중전의 제21호) 중 “밖에”를 “밖의”로, “또는 팀의 주관”을 “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관리팀장”을 “남북협력지구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18.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19. 남북협력지구의 통행·통관·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20. 남북협력지구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21.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22.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23.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2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진행 및 기록관리

25.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 개발지원협력과장”으로, “교류부장·연락협력부장”을 “연락협력부장”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 ①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기획운영팀을 둔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지원

4. 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대한 평가·점검
5.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
6. 통일 미래전략·구상 자문기구 운영 및 지원
7.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협의체 운영
8.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9.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10.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정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277”을 “291”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8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하고, 서기관 “13”을 “1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을 “29”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5”를 “7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을 “8”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5”로 하며, 전산주사 “4”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8”을 “7”로 하며, 전산주사보 5 다음에 “운전주사보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7”을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7”을 “291”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8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하고, 서기관 “13”을 “15”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을 “29”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5”로 하며, 전산주사 “4”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8”을 “7”로 하며, 전산주사보 5 다음에 “운전주사보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7”을 “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2”를 각각 “71”로 하고, 행정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7”을 각각 “95”로 하고, 행정주사 “23”을 “21”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7”을 각각 “95”로 하고, 행정주사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을 각각 “20”으로 하고, 서기관 및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을 “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 및 임업주사 “4”를 “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삭제하며,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2를 신설한다.

통일부령 제10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2월 10일”을 “2025년 2월 9일”로 한다.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8조 관련)

통일미래전략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 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③ (생략)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일정책실에 <u>정책총괄과 · 정책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협력과 및 정책협력과</u> 를 둔다.	④ ----- <u>정책총괄과 · 정책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협력과 · 정책협력과 및 참여소통과</u>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u><신 설></u>	<u>1. 통일정책 국내 협력 강화 대책의 수립 · 시행</u>
1. (생략)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u><신 설></u>	<u>7. 통일문화 콘텐츠 기획 · 개발 및 보급</u>
<u><신 설></u>	<u>8.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u>
3. 통일문화와 관련된 <u>국내외 기관과의 협조</u>	9. ----- <u>기관 · 단체와</u> -----
4. 민간 <u>통일문화 운동단체</u> 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3. --- <u>통일운동 단체</u> -----
5. 삭제	
6. <u>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u>	<u><삭 제></u>

7. 통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8.·9. (생략)

10. 통일센터의 지역별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설>

2. ----- 기관-----

11.·12.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삭제>

⑪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2.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4.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5.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6.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체 운영·관리

7.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공공데이터 베이스 구축·운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 ⑩ (생 략) ⑪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본계획의 수립·운영</u> <u>14.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 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u> <u>15.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 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 한 사항</u> <u>16.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 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 항</u> 제7조(정세분석국) ①·② (생 략)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u><신 설></u>	<u>영</u> <u>8.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u>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7조(정세분석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u>21. 북한공개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u>
---	--

21. (생략)

④ ~ ⑥ (생략)

제20조(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① (생략)

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이하 제4항 및 제6항에서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부·교류부 및 연락협력부를 두되, 운영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④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남북한 당국 간 정치·군사 분야에 대한 협의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영교류부 -----
----- 운영교류부 ----- 보하고, -----
----- 다만, -----

-----.

③ -----
----- 경우 -----

-----.

④ 운영교류부장-----
-----.

1. ~ 3. (현행과 같음)

4. -----
----- 협의 및 합의사항

5. <u>남북한 당국 간 정치·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의 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 14. (생 략)	<u>이행 지원</u> <삭 제> 6. <u>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u> 7. <u>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u> 8. <u>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지원</u> 9. <u>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지원</u> 10. <u>각 분야별 공동행사 및 민관 합동행사의 협의·지원</u> 11. <u>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u> 12. <u>북한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양성 등 지원</u> 13. <u>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u> 14. ~ 22. (현행 제6호부터 제1
---	---

11. 청사 및 숙소 등 시설·장비
의 유지 및 관리

⑤ 교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회담 등에 대한 협
의

2.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의
지원

3.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협의·지
원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에
관한 협의 및 합의 이행의 지
원

5.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지원

6. 북한의 인력에 대한 교육훈
련 및 양성 등 지원

7. 남북한 간 인도적 지원에 관
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의

4호까지와 같음)

19. 시설·장비-----

<삭 제>

지원

8. 각 분야별 공동행사 및 민관
합동행사의 협의·지원

9.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지원

10.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상호협력

⑥ (생략)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제20조의2(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
동위원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홍보담당관, 남북공동연락사
무소 사무처 교류부장·연락협
력부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
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홍보담당관, 개발지원협력과
장----- 연락협력부장 ----

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다.

제25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생 략)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 및 기업관리팀을 둔
다.

③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관
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
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
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
원

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
된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

제8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및 남북협
력지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④ 남북협력기획과장-----
-----.

1.·2. (현행과 같음)

3. -----

----- 협의·연락 ---
-- 체결·이행·점검-----
--

<삭 제>

<삭 제>

6. (생 략)

7. 남북협력지구의 통행·통관
· 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8.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 제

⑥ 기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
지원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20. (현행과 같음)

21.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분석·평가

22.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협력

2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
지원

24.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25. -----
-- 밖의 ----- 주관--
--

⑥ 남북협력지구관리과장-----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생 략)

14.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15. · 1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과 같음)

17.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18.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
련된 관리기관의 지도 · 감독

19. 남북협력지구의 통행 · 통관
· 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20. 남북협력지구 아카이브 구
축 및 관리

21.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
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22.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
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23.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
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2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 · 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진
행 및 기록관리

<신 설>

제26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신 설>

25.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8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 ①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기획운영팀을 둔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지원

4. 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u>대한 평가·점검</u> <u>5.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u> <u>6. 통일 미래전략·구상 자문기구 운영 및 지원</u> <u>7.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협의체 운영</u> <u>8.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협력</u> <u>9.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u> <u>10.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u> <u>제29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정원) 통일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u>
<u><신 설></u> 통일부령 제10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통일부령 제10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일법제지원팀장은 <u>2023년 2월 10일까지</u> 존속한다.	----- ----- -- <u>2025년 2월 9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통일부령 제11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에 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 원 <u>2명</u>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u>2명</u>)은 2024년 12월 27일 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28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u>2명</u> 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 <u>1명</u> ----- --- <u>1명</u> ----- ----- ----- ----- <u>1명</u> - -----.
② ~ 제3조 (생 략)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77	291	+14
일반직 계	273	287	+14
고위공무원단	9	10	+1
서기관	13	15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	29	+2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5	76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	8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4</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5</u>	+2
·	·	·	
전산주사	<u>4</u>	<u>6</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8</u>	<u>7</u>	-1
·	·	·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 1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u>7</u>	<u>8</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77	291	+14
일반직 계	273	287	+14
고위공무원단	9	10	+1
서기관	13	15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	29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	8	+2

행정주사	<u>27</u>	<u>28</u>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4</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5</u>	+2
·	·	·	
전산주사	<u>4</u>	<u>6</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8</u>	<u>7</u>	-1
·	·	·	
<u>운전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u>7</u>	<u>8</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u>72</u>	.	<u>71</u>	-1
일반직	계		.	<u>72</u>	.	<u>71</u>	-1
	.		.	.	.	.	
	.		.	.	.	.	
행정서기			.	<u>4</u>	.	<u>3</u>	-1
	.		.	.	.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97</u>		<u>95</u>	-2	
일반직	계		<u>97</u>		<u>95</u>	-2	
	.		.		.		
	.		.		.		
행정주사			<u>23</u>		<u>21</u>	-2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97</u>		<u>95</u>	-2	
일반직	계		<u>97</u>		<u>95</u>	-2	
	.		.		.		
	.		.		.		
행정주사			<u>22</u>		<u>20</u>	-2	
	.		.		.		
	.		.		.		

[별표 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0</u>	<u>20</u>	-10
일반직 계	<u>30</u>	<u>20</u>	-10
·	·	·	
·	·	·	
서기관	<u>2</u>	<u>1</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u>	<u>1</u>	-1
행정사무관	<u>5</u>	<u>4</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u>	<u>4</u>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및 임업주사	<u>4</u>	<u>2</u>	-2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u> <u>또는 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송 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